

## [ 발표 1 ]

## 영국의 비공식적 보호에 관한 논쟁과 한국의 가족보호자 지원서비스 개발에 주는 시사점

조미경(광주대)

### I. 연구배경 및 목적

비공식적 보호(Informal Care)는 198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주요한 이슈로 출현하였다. 거의 모든 복지국가들이 인구고령화를 경험하면서 허약한 노인들의 보호욕구 충족이라는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공공지출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또한 이혼, 여성의 노동시장진출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장래의 보호자의 가용성에 대한 염려를 증폭시켰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복지국가들은 비공식적 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강조하며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로의 정책전환을 꾀하였다. 실제로 영국을 포함한 서구 복지국가들은 노인보호와 관련하여 국가와 가족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가족에게 더 많은 보호책임을 떠맡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 1960년 이후 현대화와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가족보호의 형태와 가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왔다. 1990년대 초에 한국 정부는 재가복지사업을 제도화함으로써 허약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보호자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나, 가족보호자들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은 극히 제한적이며, 이를 확대시키는 데 다소 저항감도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80년대에 영국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비공식적 보호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고, 이러한 논쟁이 영국의 보호자지원정책 발전에 미친 영향과 보호자지원정책의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한국 노인의 가족보호자지원서비스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1) 영국의 비공식적 보호에 관한 논쟁, 보호자지원정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비공식적 보호, 보호자, 노인보호정책에 관한 영국문헌을 조사하였다.
- 2) 영국경험이 한국 노인의 가족보호자지원서비스의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에 관한 한국문헌을 조사하였다.

### 3. 주요 결과

1980년대 영국의 비공식적 보호에 관한 논쟁은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특히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여성주의자들의 연구들은 이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들의 주된 관심사는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무급노동을 가시화하고 보호자(여성)가 케어와 취업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자들과 복지국가비판론자들은 의존적 사람들의 지원과 보호에 대한 가족책임의 중요성과 국가의 최소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사회보호의 합리화를 통해 비용효과성 추구를 강조하였던 사람들은 비공식적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사례관리연구자들은 보호자에 대한 도구적 지원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서 비공식적 보호, 보호자에 관한 이슈는 영국의 정책아젠다에 점차 가시화되었다. 1980년대 말 정부백서는 보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정책의 높은 우선순위로 삼았고, 이것은 1990년대에 이루어졌던 지역사회보호정책 개혁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보호자 지원은 주로 비용효과성 - 노인복지를 위하여 보호자를 지원하는 것 - 에 의하여 정당화되었다. 영국 정부는 보호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현재 노인들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보호자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영국의 보호자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은 고용지원, 경제적 지원, 서비스 지원을 포함한다.

### 4. 결 론

허약한 노인들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함께 한국 정부는 가족보호의 중요성과 보호자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보호자 지원은 효과적인 노인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며, 보호자들은 여전히 사회복지정책에서 그들 자신만의 욕구와 관심사를 가진 복지대상자로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한국 가족보호자지원서비스 개발에 주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상황에서 가족보호자지원서비스정책은 정의와 공평성(justice and fairness)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성평등(gender justice)에 기초하여 여성보호자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여성주의적 접근은 비록 여성들이 주된 보호책임을 맡고 있지만 남성들도 노인보호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 한국 상황에 관련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보호자지원서비스는 남성과 여성보호자 모두의 욕구와 관심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호자들이 그들 자신만의 관심사를 추구할 수 없는 의무관계에 얽매어 있으므로 공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Twigg의 주장은 한국 상황에도 매우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보호자지원서비스는 가족보호자들이 계속해서 보호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보호노력을 소중한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보호에 있어서 노인의 독립을 장려하는 정책적 접근은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이 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보호자의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서비스가 동시에 개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보호의 이중적 초점은 보호자들이 자신이 돌보는 노인들과는 다른 욕구와 관심사를 갖기 때문에 서비스 개입의 초점이 단지 노인에게만 두어질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노인과 보호자의 관심사들간의 잠재적 갈등이 있을 경우에 이들 관심사들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관리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